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6-51호

-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개방형직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충청북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임용기간	주요업무내용
양성평등 가족정책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2년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성평등 정책,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권익증진, 취약여성 발생예방 및 피해자 지원 5. 여성인력개발,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건강가족, 취약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선도에 관한 사항 8. 주요시설(여성, 가족, 청소년) 관리 및 운영지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임용신분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12.17.(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 및 경력요건

❍ 자격 및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가능

임용예정 직위	자격 및 경력요건
양성평등 가족정책관 (개방형4호)	[학력 기준] ① 박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학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④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⑥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양성평등관련 정책에 관한 기획 조정, 연구, 여성복지와 권익증진·지위향상, 가족·청소년·다문화가족 등 양성평등가족정책과 관련된 분야**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적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 직무관련 포상, 공직 적응능력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참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6. 11. 24.(화) ~ 11. 3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2. 11.(금) 전·후 개별 통지
면접 시험	2026. 12. 14.(월) ~ 12. 18.(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임용예정시기	2027. 1월 중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시험·채용정보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sihum/index.do)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확정하여 공고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24.(화) ~ 11. 30.(월) 09:00~18:00, 5일간**

❍ **접 수 처 : 충청북도 인사혁신과(인재채용팀)**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충북관 7층)
- 전 화 : 043) 220-473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으로는 접수 불가

응시수수료 : 1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중에만 접수가능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충청북도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받을 분"은 공란**)하여 우편접수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 내에 채용 담당자(☎043-220-4733)에게 우편접수 사실 고지**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 면접시험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8. 보수수준

❍ 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단위 : 천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개방형 4호	-	70,490

❍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1만원)를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력만 인정**

※ 전임(정규직 또는 상근직)외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 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하여 이력서에 기재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 **서류전형 자격 및 경력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 **경력 증명서 각 1부** <별지 제8호 서식-필요시 사용>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가능)" 등을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확인자(서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확인,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성격(업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경력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일부 인정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 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도 제출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첨부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해외학위 등)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응시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필수 제출을 요함
  ※ 경력검증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으로는 경력인정 불가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료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가능

❍ 정보화능력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해당자)

❍ 관련분야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

- 기관명, 수상자(단체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등) 증빙서류 (해당자)

- 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는 이력서상 내용 요약 기재 제출하고, 논문 표지, 저서 표지, 연구개발 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격증, 수상, 상훈 등은 심사에 반영되므로 해당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10.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기준(학위·실무경력 등의 인정범위 포함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형식적 요건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시험절차 등	인사혁신과	043-220-4733	
업무 관련	인사혁신과	043-220-4713	

붙임 1.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각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끝.